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고향사랑 기부자 세액공제 미적용 시 답례품 확대〉
■ 이연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038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연희의원 등 18인
2. 발의연월일 : 2026. 4. 2.
3. 회부연월일 : 2026. 4.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 한도가 기부금액의 30퍼센트로 제한되고, 별도로 세액공제가 인정하고 있으나 기부자가 세제혜택과 답례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2025년 모금액 1,515억 원 중 10대 이하와 70대 이상의 기부 비율은 각각 0.05%, 2.01%에 불과하며, 총 139만여 건의 기부 중 10만원 이하 기부가 98.3%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답례품 제공 한도를 기부액의 50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자의 선택권을 넓히고(제9조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고 기부 시점에 세액공제 미신청 의사를 확정하도록 하여 이중 혜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기부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답례품 제공 한도를 현행 기부금액의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기부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 ----- ----- ----- ----- . 다만, <u>기부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받으려는 기부자는 기부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을 의미하고¹⁾, 법인이 아닌 개인이 주체가 되어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²⁾ 1인당 연간 2,000만원의 상한액 내에서 기부할 수 있음³⁾.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신용카드·전자자금 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을 제공받고⁴⁾⁵⁾,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44.0%,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⁶⁾.

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3.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구분	세액공제 내용
10만원 이하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100%)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초과분에 대해 44% 세액공제
20만원 초과	초과분에 대해 16.5% 세액공제

- ※ 2026년부터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16.5%에서 44%로 상향 적용됨.
- ※ 특별재난지역은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 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됨.
- ※ 자료: 행정안전부

현행 제도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는 종합소득이 없는 등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기부자는 답례품만 제공받게 되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모두 제공받는 일반 기부자와 비교 시 기부 혜택의 형평성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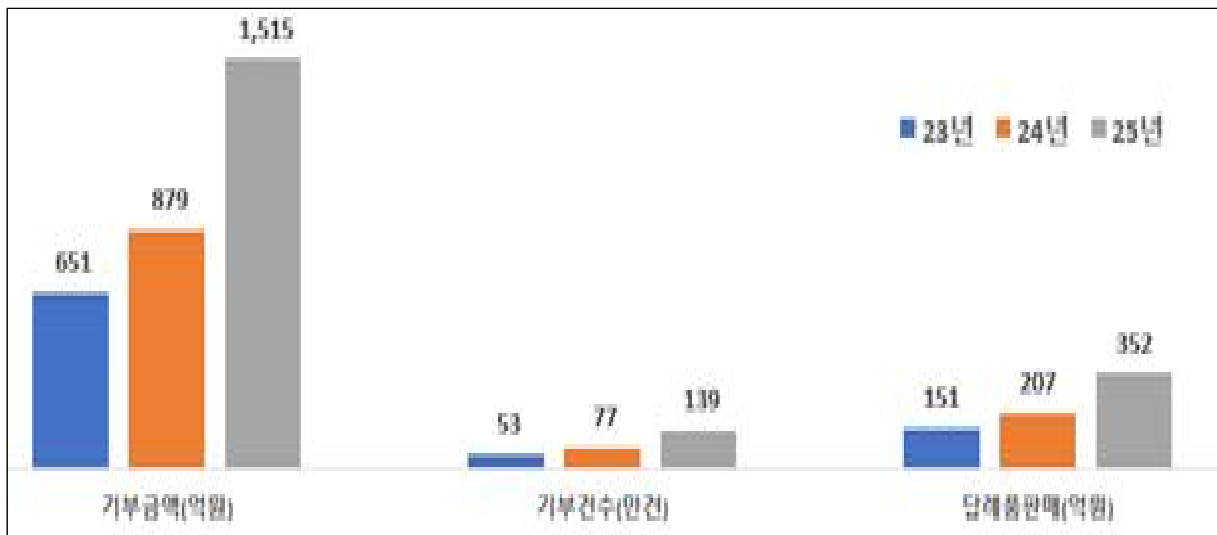
이러한 측면에서 개정안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기부자의 상대적인 혜택 부족을 답례품의 추가 지급을 통해 보완하여 기부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부 참여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타당해 보임.

다만, 세액공제는 국비로 지원되는 반면 답례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제공되는 구조인 만큼 답례품 제공 한도의 확대는 지방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및

재원 부담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예컨대, 2025년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답례품 규모가 약 352억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기부자가 세액공제 대신 확대된 답례품을 선택할 경우 최대 약 70억원의 추가적인 지방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답례품 제공 한도 상향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향사랑 기부금 연도별 기부금액 및 기부건수]



※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답례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제공되는 바, 답례품 제공 한도의 상향은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추가 답례품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37

참고1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 주요 내용

- (제도취지)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지역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기부주체) 개인(법인 불가)
- (기부대상)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지) 외 전국 모든 지방정부
-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2,000만 원 ※ 기부금의 30%이내 답례품 제공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초과}~20만원^{이하} 44%, 20만원 초과 16.5%
 - ※ 특별재난지역은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 시 10만 원 초과분 33% 공제
 - ※ '26년부터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적용(16.5% → 44%)

□ 기부 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에서 기부 및 답례품 신청
 - *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액티부키, 웰로, 위기브, 체리
- (오프라인) 전국 5,900여 개 농협은행·농축협지점 창구에서 기부 가능

구분	합계	온라인			오프라인 (농협창구)
		소계	고향사랑e음	민간플랫폼*	
건수	1,391,850	1,351,129	943,377	407,752	40,721
비율	100.0%	97.1%	67.8%	29.3%	2.9%
금액(억 원)	1514.5	1416.0	1017.0	399.0	98.6
비율	100.0%	93.5%	67.1%	26.4%	6.5%

* 위기브 23.5만건(16.9%), 웰로 14만건(10.2%) / 국민(1.3만건), 농협(0.8만건)
順

□ 기부 현황

- (모금 실적) 650억^{'23} → 879 억^{'24} → 1,515 억 원^{'25}으로 제도 시행 3년만에 1,500억 원 돌파
- (지역경제 기여)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은 총 352억 원 판매되어 전년 대비 70% 증가